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[별표 8] <개정 2020. 3. 31.>

기본부과금의 농도별 부과계수(제28조제2항 관련)

1.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없는 시설

가.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

구분	연료의 황함유량(%)		
	0.5% 이하	1.0% 이하	1.0% 초과
농도별 부과계수	0.2	0.4	1.0

나. 가목 외의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, 먼지를 배출하는 시설 및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농도별 부과계수: 0.15. 다만,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를 통해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농도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농도별 부과계수를 적용할 수 있다.

2. 법 제39조에 따른 측정 결과가 있는 시설

가. 질소산화물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

1) 2020년 12월 31일까지

구분	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			
	70% 미만	70% 이상 80% 미만	80% 이상 90% 미만	90% 이상 100% 미만
농도별 부과계수	0	0.65	0.8	0.95

2)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

구분	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					
	50% 미만	50% 이상 60% 미만	60% 이상 70% 미만	70% 이상 80% 미만	80% 이상 90% 미만	90% 이상 100% 미만
농도별 부과계수	0	0.35	0.5	0.65	0.8	0.95

3) 2022년 1월 1일 이후

구분	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							
	30%	30%	40% 이상	50% 이상	60% 이상	70% 이상	80% 이상	90% 이상

	미만	이상 40% 미만	50% 미만	60% 미만	70% 미만	80% 미만	90% 미만	100% 미만
농도별 부과계수	0	0.15	0.25	0.35	0.5	0.65	0.8	0.95

나. 가목 외의 기본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에 대한 농도별 부과계수

구분	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							
	30% 미만	30% 이상 40% 미만	40% 이상 50% 미만	50% 이상 60% 미만	60% 이상 70% 미만	70% 이상 80% 미만	80% 이상 90% 미만	90% 이상 100% 미만
농도별 부과계수	0	0.15	0.25	0.35	0.5	0.65	0.8	0.95

비고

1. 배출허용기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말한다.
2.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(%) = $\frac{\text{배출농도}}{\text{배출허용기준농도}} \times 100$
3. 배출농도는 제29조에 따른 일일평균배출량의 산정근거가 되는 배출농도를 말한다.